|  |  |  |
| --- | --- | --- |
|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수출화물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5]143호  저장(浙江)성 재정청•국가세무국: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설립을 동의하는 비준문건>(국함[2015]44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기업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매입증빙이 없는 화물 수출 시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1. 수출화물을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단일 창구' 플랫폼의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킨다.  2. 수출기업은 '단일 창구' 플랫폼에 그가 매입한 화물의 판매업체 명칭과 납세자 식별코드, 판매일자, 화물명칭, 계량단위, 수량, 단가, 총 금액 등 매입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한다.  3. 이 통지에서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기업이라 함은 '단일 창구' 플랫폼에 등기비안(備案)하였고 항저우시에 등록한 기업을 지칭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 12월 18일 |  | **关于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出口货物有关税收政策的通知**  财税[2015]143号  浙江省财政厅、国家税务局：  根据《国务院关于同意设立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国函〔2015〕44号）精神，对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企业出口未取得合法有效进货凭证的货物，同时符合下列条件的，在2016年12月31日前试行增值税免税政策：  一、出口货物纳入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单一窗口”平台监管；  二、出口企业在“单一窗口”平台如实登记其购进货物的销售方名称和纳税人识别号、销售日期、货物名称、计量单位、数量、单价、总金额等进货信息；  三、本通知所称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企业，是指在“单一窗口”平台登记备案且注册在杭州市的企业。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5年12月18日 |